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2022. 3. 2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77호로 2022년 3월 10일 김길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안 제2조)

나.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3. 8. ~ 3. 1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정의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통합놀이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하나되어 함께 어울려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놀이터 정의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통합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어울려 소통하면서 놀 권리를 실현해 가는 공간이며, 장애·비장애 경계 없이 누구나 물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
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